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및 2015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안내책자를 각 세무서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책자 원본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서에서는 연말정산 업무 초보자를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만 수록한다.

01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급여총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당해연도가 종료된 후 실제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다음(결정세액)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①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 법인, 국가 등 모두 포함) 단,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그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② 연말정산 시기(2014년도 귀속분 기준)

1 일반적인 경우(계속 근로자)

구분	연말정산시기	신고·납부기한	지급조서 제출기한
월 별 납부자	2015.2.28	2015.3.10	2015.3월 10일
반기별납부자		2015.7.10	

2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정상여

인정상여는 법인세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받은 것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세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내용을 재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속연월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지급연월은 상여처분한 월로 표시한다.

■ 2014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의 수정신고

① 2014년 귀속(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2014년분 연말정산시에는 인정상여를 포함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201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② 2015년 4월 10일에 인정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15년 3월 귀속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 귀속연월 : 2015년 2월
- 지급연월 : 2015년 3월
- 제출연월일 : 2015년 4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A04 연말정산 항목 인원 1명, 총지급액은 인정상여금액, 소득세 등은 재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한다.

④ 반기별 신고자 연말정산 및 법인의 인정상여분 신고

① 반기별 신고납부자는 다음해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이 많은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월 및 2월분 원천세 지급 및 징수에 관한 내용과 연말정산분을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㉔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7월 10일 상반기 신고시에는 3월부터 6월 기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서 반기별 신고대상자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의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에 대하여 귀속연월 2월, 지급 연월 3월로 하여 4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당초 연말정산분이 있는 경우 인정상여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재정산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1월, 2월, 3월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은 반기 신고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연말정산 개요만을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한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발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프로그램 제공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과세자료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신고안내 해설 동영상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동영상

■ 연말정산 신고안내 무료교육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무료교육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③ 연말정산 업무처리 절차

① 근로자

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 작성 제출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종 소득공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보장정보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의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

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안내 및 기재사항 확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개정 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에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근로자가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전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납부 또는 환급세액 결정

‘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결정한다.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결과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15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제출 및 세액 납부 또는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2015년에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① 신고구분」란 “환급신청”에 “○” 표시하고 「②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2014년 귀속분 개정 사항

■ 소득세 기본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총 전				개 정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적용시기> 2014.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세법 제47조 ①]

총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5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3,000만원 이하	15%	1,500~4,5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1억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5%	1억원 초과	2%

<적용시기>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59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관련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input type="radio"/>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input type="radio"/>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input type="radio"/>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input type="radio"/>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적용시기>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녀자공제 대상자 조정 [소득세법 제51조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녀자공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input type="radio"/> 공제금액 : 연 5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조정 <input type="radio"/>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 제24조 ④, 소득세법 제34조 ③]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input type="radio"/> 법정기부금 : 3년 <input type="radio"/> 지정기부금 : 5년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input type="radio"/> 법정기부금 : 5년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⑤]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input type="radio"/> 국민주택규모 <input type="radio"/>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input type="radio"/>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 폐지 <input type="radio"/> <삭 제> <input type="radio"/>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input type="radio"/>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단, 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

<적용시기>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다만, 2014.1.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이전 차입자로서 1주택구입 시 이전 차입분도 적용)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소령 제118의6조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input type="radio"/>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input type="radio"/> (학교외 구입)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input type="radio"/>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0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령 제118의5조 ③]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input type="radio"/>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input type="radio"/>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 기준 삭제)

<적용시기> 20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6의2조 ①②]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 ' 14. 12. 31. 	<p><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 본인의 2014년 하반기·20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10% *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 ' 16. 12. 31

<적용시기> 20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특법 제76조 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p><input type="checkbox"/>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적용시기> 201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9의4, 조특법 제86의3조 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p> <p><input type="checkbox"/> 특별공제</p> <p>○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p> <p>○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등 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p> <p>○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p> <p>○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p> <p>○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p> <p>*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로 전환</p> <p>○ 세액공제율</p> <p>▷ 15% 적용대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 25% 적용)</p> <p>※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 76①)</p> <p>▷ 12% 적용대상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p> <p>○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p> <p>○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p> <p>*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가 적용대상</p>

<적용시기> 20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 [소득세법 제59조]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p> <p>○ 50만원</p> <p>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55%</p> <p>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30%</p>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p> <p>○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p>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3~66만원*</p> <p>*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p> <p>○ (총급여 7천만원 초과) 50~63만원*</p> <p>*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p>

<적용시기>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제30조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3. 12. 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자 확대 - (좌동)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5. 12. 31. (2년 연장)

<적용시기> 20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은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제91조의16]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radio"/> (저축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input type="radio"/>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제외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15. 12. 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2014.1.1. 이후 설정.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전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월세액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제52조 ④, 소령 제112조 ④⑤, 조특법 제95의2조]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주 <p><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않됨 <p><input type="checkbox"/> 월세액 소득공제(소법 § 52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적용배제 ○ 소득공제율 : 60% ○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소득공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p><input type="checkbox"/>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원*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p><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p><input type="checkbox"/>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 95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적용배제 ○ 세액공제율 : 10%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75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 세액공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 (좌 등)

<적용시기> 20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02 연말정산 세액 결정 등

1 연말정산에 의한 납부 및 환급세액 계산 개요

- ①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공적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1. 인적공제(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인적공제(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3. 공적 연금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 본인부담금
 4.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 근로자 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5. 기타공제(조특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1.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법 제59조)
 2. 자녀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2)
 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3)
 4. 특별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4)
 -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4 ①)
 - 의료비 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4 ②) 및 교육비 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4 ③)
 - 기부금 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4 ④)
 5.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
- 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세액

연말정산요약도

1 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식대(월 1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등																								
2 단계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 급여액의 100분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 </tr> <tr> <td>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 </tr> <tr> <td>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3 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국민연금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단, 2001년 이후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등, 장기펀드 불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투자조합 등 출자																								
4 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 구간</th> <th>세율</th> <th>누진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d></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15%</td> <td>108만원</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24%</td> <td>522만원</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490만원</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td> <td>38%</td> <td>1,940만원</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5 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 세액	세액감면 : 중소기업취업청년 등 세액감면 (50%) 지녀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초과 1인당 2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세액공제 종류</th> <th>소득공제한도액</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연금계좌</td> <td>400만원</td> <td>12/100</td> </tr> <tr> <td>보험료</td> <td>100만원</td> <td>12/100</td> </tr> <tr> <td>의료비</td> <td>700만원 (본인 등 한도 무)</td> <td>15/100</td> </tr> <tr> <td>교육비</td> <td>300만원, 900만원 (대학)</td> <td>15/100</td> </tr> <tr> <td>기부금</td> <td>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td> <td>15(25)/100</td> </tr> <tr> <td>정치자금기부금</td> <td>10만원 이하 (초과 세액공제)</td> <td>100/110</td> </tr> <tr> <td>표준세액공제</td> <td>100만원</td> <td>12만원</td> </tr> </tbody> </table> 근로소득 세액공제 500,000원 이하 : 산출세액 × 55% 500,000원 초과 : 산출세액 × 30% 공제한도 :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 63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 기납부 세액공제	세액공제 종류	소득공제한도액	공제율	연금계좌	400만원	12/100	보험료	100만원	12/100	의료비	700만원 (본인 등 한도 무)	15/100	교육비	300만원, 900만원 (대학)	15/100	기부금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5(25)/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초과 세액공제)	100/110	표준세액공제	100만원	12만원
세액공제 종류	소득공제한도액	공제율																								
연금계좌	400만원	12/100																								
보험료	100만원	12/100																								
의료비	700만원 (본인 등 한도 무)	15/100																								
교육비	300만원, 900만원 (대학)	15/100																								
기부금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5(25)/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초과 세액공제)	100/110																								
표준세액공제	100만원	12만원																								

②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구 분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성과급 상여	1.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② 법원판결 등(노동부 조정 및 결정 포함)에 의하여 과거연도 이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소득 합산

동일 연도에 2군데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① 재취직자 등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근무지에서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받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근무지에서 중도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환급(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발생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

②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중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후 국제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게 되며,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과세연도 중 2군데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함)하여야 하고,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담당자는 연도 중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입사 전 근로소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 근무지 소득을 종근무지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합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충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보충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 직장의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말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전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외국인 연말정산

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며,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을 근로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②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7%)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매월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포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7%) 적용방식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방법 중 매월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 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

[예 제]

- ① 총급여액 15,000만원
- ② 비과세 소득 500만원

[풀 이] 결정세액 : 2,635만원

<결정세액 계산>

· 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000만원 + 500만원 = 15,500만원

· 결정세액 = 총급여 × 17% = 15,500만원 × 17% = 2,635만원

⇒ 단일세율 특례 신청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0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자 소득명세 입력 및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급여

구분	금액	비과세 금액	금액
월급여 합계	350만원 × 12월=4,200만원	식대	120만원
연간상여금	1,60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당	120만원
자녀 수업료지원	25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학자금 지원	300만원	소계	540만원
성과급여	190만원		
합계	6,540만원	총급여액	6,000만원

□ 비과세금액 기재방법

비과세구분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기재 항목	코드
식대	×		P01
6세이하 자녀	○	⑱-2	Q01
비과세학자금	○	⑱-5	G01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6,000만원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근로소득 공제금액 계산

$$1,200\text{만원} + (6,000\text{만원} - 4,500\text{만원}) \times 5\% = 12,750,000\text{원}$$

■ 근로소득금액(47,250,000원) : 근로소득(6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750,000원)

② 인적공제 [2014년 귀속 기준]

①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는 사람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법인46013-1053, 1999.3.23.)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②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인적공제대상자 판정 기준 출생연도(2014년 귀속분)

- ① 직계비속 : 1994. 1. 1. 이후에 출생한 자녀
- ② 직계존속 : 1954.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
- ③ 경로우대 : 1944. 12. 31.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
- ④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함

③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분리과세대상소득[일용근로자의 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근로소득 :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3,333,333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급여 3,333,333원 - 근로소득공제 2,333,333원)
 단,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령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소득 :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1. 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연금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2. 사적연금 :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종류별 소득 및 소득공제금액

소득종류	공제금액	소득금액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급여액 500만원 이하 : 70%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 필요경비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 80% 공제대상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의 80%	기타소득 - 필요경비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 전액 *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양도소득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 필요경비 등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대상 여부

[1] 기본공제대상자

- ① 해당 거주자
- ②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③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속(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2]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되지 않는 것

-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본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추가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3]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더라도 공제되는 것

- 의료비세액공제

[4] 부양가족의 연령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되는 것

- 교육비세액공제

[5]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연령 조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형제자매, 수급권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사용금액
- 직계존속의 교육비

[6]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공제항목 비교

구 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1}	기부금 ^{주2}
	일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일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연 령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인적공제 계산 사례

부양가족

부양가족	나 이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배우자	만 45세	690701-2234567	황 정 연	사업소득
모	만 71세	430530-2234657	김 초 선	소득 없음
자녀 1	만 18세	960501-1234567	이 태 현	고등학생
자녀 2	만 6세	081230-4234567	이 태 희	취학전 아동

인적공제금액 : 7,000,000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700만원	
기본공제	600만원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본인, 부양가족(자녀2명), 모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	-	201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다자녀추가공제	-	201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제외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부

㉑ 총급여(㉒,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60,000,000	
㉓ 근로소득공제		12,750,000	
㉔ 근로소득금액		47,250,000	
중 소 공 제	기본 공제	㉕ 본 인	1,500,000
		㉖ 배 우 자	
		㉗ 부양가족(3 명)	4,500,000
	추가 공제	㉘ 경로우대(1 명)	1,000,000
		㉙ 장 애 인(명)	
		㉚ 부 녀 자	
		㉛ 한부모가족	

3 소득공제

1 공적 연금 근로자 본인부담금 불입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2 사적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종전의 사적연금보험료(연금계좌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는 2014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 구분(공적연금, 사적연금)

구분	범위
공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
금 계 좌 연 금 저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납입계약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 형태로 받는 소득
그 밖의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연금이외에 연금형태로 받는 연금

▶ 연금저축의 소득세법 명칭 변경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 연금저축(2001 이후) → 연금계좌(2013년 이후)

4 특별소득공제

1 공적 보험료 소득공제 [소법 제52조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주택과 관련한 차입금 등 및 주택 관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과 관련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로 구분되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하여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은 1,500만원으로 한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④]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요건은 없으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출자 요건

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관련)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3. 1,000분의 29(2014.1.1.~ 2014.3.14.까지는 1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소득세법 제52조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 2014년 개정 세법 적용시기

○ 201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1.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2.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 위의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름(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기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공제대상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1천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고정금리 방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1.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2011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자금공제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다.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제기준**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로서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개정 세법] 2015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개정규정은 2015. 1. 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4. 12. 23.) 5조]
2015. 1. 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법 52조 5항 및 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4. 12. 23.) 24조]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2014. 12. 23. 신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 국민연금 및 공적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지출내역 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23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보험료	건강보험료	15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고용보험료	3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지출내역 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80만원	본인	요건 충족(2011.7.5. 차입)

㉑ 총급여(㉒,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60,000,000		
㉒ 근로소득공제				12,750,000		
㉓ 근로소득금액				47,250,000		
총 합 소 득 공 제	기본 공제	㉔ 본인		1,500,000		
		㉕ 배우자				
		㉖ 부양가족(3 명)		4,500,000		
	추가 공제	㉗ 경로우대(1 명)		1,000,000		
		㉘ 장애인(명)				
		㉙ 부녀자				
		㉚ 한부모가족				
	연금 보험 료공 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2,300,000		
		㉜ 공적 연금 보험료공제	㉝ 공무원연금			
			㉞ 군인연금			
			㉟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특별 소득 공제	㉡ 보험료	㉟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1,600,000	
			㊱ 고용보험료		300,000	
		㉢ 주택자금	㊲ 주 택 임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액	대출기관 거주자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2,800,000
2012년 이후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상환대출 그 밖의 대출			
㊳ 기부금(이월분)						
㊴ 계				4,700,000		
㉣ 차감소득금액				33,250,000		

5 기타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14년 1. 1. 개정된 소득세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2000. 12. 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계속하여 한도내의 금액(저축납입액의 100분의40, 공제한도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14년에 연금계좌로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제도(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가입기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에 2000.12.31까지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2001.1.1이후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소득공제 한도금액	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불입액 전액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가입대상	만20세 이상	만18세 이상
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공제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 연금저축의 소득세법 명칭 변경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 연금저축(2001 이후) → 연금계좌(2013년 이후)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1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 사용금액 제외)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및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

1. 최저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수취분을 포함한다.
2. 소득금액(연령 조건은 없음)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명의(형제자매는 제외함)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며,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으로 한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즉,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한도액은 300만원이나 한도초과액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공제를 하되, 각각의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한도액은 500만원이 된다.

1.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금액 및 현금영수증 수취액의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30

2.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금액 및 현금영수증 수취액의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30

3.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금액 및 현금영수증 수취액의 합계액(직불카드등사용분 단,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100분의 30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14. 12. 23. 신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2014. 12. 23. 신설)

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사 례 전년 대비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증가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 내역(총 2,600만원 사용)

구분	연간 사용액	상반기 사용액	하반기 사용액
신용카드	1,000만원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000만원	4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6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포함)
체크카드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총계	2,6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 2013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 내역(총 2,200만원 사용)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원

□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액 =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1,000만원)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1,400만원) × 50%} × 10% = 300,000원

*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사용금액의 15%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사용금액의 30%공제)**

다음 각호의 사용금액은 그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각호의 사용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한다.

1.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
2.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한 경우
3.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4. 체크카드, 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제126의2③, 조특령121의2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지방자치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수수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③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87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재외국민,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개정 세법] 2015년 이후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정규정은 2015. 1. 1.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15. 1. 1.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4. 12. 23.) 66조]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로 하고, 연 납입액은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제금액 한도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1,500만원,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규정에 따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기]

거주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2.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소득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일 것
3.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4.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6.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91조의16]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 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저축취급기관)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해지)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⑥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조특법 제88조의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⑦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개정] 2015년 이후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개정규정은 2015. 1. 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2015. 1. 1.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법 16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 부칙(2014. 12. 23.) 60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사 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60,000,000원
•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사용액 35,000,000원,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사용금액 5,000,000원)	30,000,000원
• 대중교통 사용금액(2)	1,000,000원
• 직불카드 사용금액(3)	3,000,000원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3)	2,000,000원
[공제대상금액 계산]	
① 대중교통 및 직불카드사용금액 4,000,000원 × 30% [(2) + (3)]	1,500,000원
② 신용카드사용금액 30,000,000원 × 15% (4)	4,500,000원
<공제액 계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15,000,000원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최소 총급여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신용카드사용금액(30,000,000원) > 최저사용금액(15,000,000원)	
③ 최저사용금액(15,000,000원) × 15% (5)	2,250,000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① + ② - ③]	3,750,000원
소득공제 한도액 : MIN [총급여액 60,000,000원 × 20%], [3,000,000원]	3,000,000원
추가 공제금액(대중교통 사용금액)	750,000원

⑳ 차감소득금액	33,250,000		
그 밖의 소득공제	㉓ 개인연금저축		
	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㉕ 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㉕-1 청약저축	
		㉕-2 주택청약종합저축	
		㉕-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㉖ 투자조합출자 등		
	㉗ 신용카드 등 사용액	3,750,000	
	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㉙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㉚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㉛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㉝ 그 밖의 소득공제 계	3,750,000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의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사례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㉕ 종합소득 과세표준	29,500,000
㉖ 산출세액	3,345,000

5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1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금 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 5천500만원 이하	→ 66만원
·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
·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급여비율(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 례 근로소득세액 계산

총급여액 60,000,000원
 산출세액 3,345,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630,000원) :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66만원 - [(60,000,000원 - 55,000,000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630,000원

②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 자녀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 례 자녀세액공제 계산

자녀 2명 : 300,000원

■ 자녀세액공제액 300,000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1.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2.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으로 불입한 금액(사용자 부담분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공적보험료 및 개인연금저축**

1.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소득공제대상으로 세액공제대상은 아니다.
2.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계속 불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으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 례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

연금계좌납입액 : 2,500,000원

■ 연금계좌세액공제액(300,000원) = 연금계좌납입액(2,500,000원) × 12%

④ **특별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4]**

■ **보험료 세액공제**

[1]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생명보험
- ② 상해보험
- ③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⑤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2]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한도액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로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법인46013-249, 1999.1.20)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보험료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 례 보험료세액공제 계산

보장성보험료 납입액(계약자 근로자 본인) : 3,000,000원

보장성보험료 한도액 : 1,000,000원

■ 보험료세액공제액(120,000원) = 보험료공제한도액(1,000,000원) × 12%

■ 의료비 세액공제

[1]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에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요건인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만20세 이상인 자녀 또는 만60세 미만의 부모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특령 제121조의 2 제6항)
-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 학원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3-3172, 1998. 10.28)

[2]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액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①항에서 정하는 금액

의료비 공제액 = 1(한도액 700만원) + 2

1.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제외한 의료비지출액 - (연간 급여액 × 3/100)
2.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단, 기타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1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 경로우대자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경로우대자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단, 인적공제대상의 추가 공제대상이 되는 경로우대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의료비세액공제 계산 사례

□ 의료비 지출내역

지출내역 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고
의료비	수술비	250만원	배우자	근로자 지출
	입원치료비	100만원	모	
	보약(건강증진)	150만원	본인	
	입원치료비	230만원	본인	
	시력교정용안경	35만원	배우자	근로자 지출
	시력교정용안경	55만원	본인	

구분	수술	입원치료비	시력교정용안경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본인		230만원	55만원 → 50만원한도	280만원	727,500
모		100만원		100만원	
부양가족	250만원		35만원	105만원	
합계	250만원	330만원	90만원	485만원	

국세청 자료	250만원	330만원		
기타 자료			90만원	

사 례 의료비세액공제 계산

*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자료에 해당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4,850,000원 (② + ③)

① 총급여액의 3% → 1,800,000원 (60,000,000원 × 3%)

② 그 외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50,000원

1,050,000원 = 2,850,000원 - 1,800,000원

③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금액 : 3,800,000원

○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 대상금액(4,850,000원) × 15% = 727,500원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 의료비 세액공제액 : 727,500원

■ 교육비 세액공제

[1]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및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에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①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②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 ④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⑤ 학교 등(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다음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학점인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따른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월단위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

- ②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제1항 1호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2.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 **교육비 공제시 유의사항**

- 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학비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 ②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 ③ 만 20세 이상인 대학생인 자녀인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해당된다. 단,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④ 근로자본인의 대학원교육비는 전액 소득 공제된다.
- ⑤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된다.
- ⑥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3-3984, 1998.12.19)

[2]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액

▶ **교육비 공제한도액**

구 분	공제한도액	공제대상교육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 지출금액 전액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취학전 아동
유치원아 및 취학전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학원수강료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교육비세액공제 계산 사례

지출내역 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고
교육비	수업료	250만원	태현(고등학생 자녀)	회사 지원(과세대상 급여)
	교복구입비	35만원	태현(고등학생 자녀)	
	학원수강료	120만원	태현(고등학생 자녀)	
	체육시설	120만원	태희(취학전 자녀)	주 1회 월 단위
	대학원(박사과정)	300만원	본인	회사 전액지원(비과세)

부양가족	교육비 내역	자료구분	금액	공제대상여부
이태희 (취학전아동)	체육시설수강료	기타 자료	120만원	공제대상
이태현 (고등학생)	수업료	국세청 자료	250만원	공제대상
	교복구입비	기타 자료	35만원	공제대상
	학원비	-	120만원	공제대상 아님
이강모	대학원 수강료(비과세학자금)	-	300만원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구분	공제대상	공제대상 제외	공제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취학전아동	120만원		300만원	120만원	607,500
고등학생	285만원	120만원	300만원	285만원	
근로자 본인		300만원	없음	-	
합계	405만원	420만원		405만원	

■ 교육비세액공제액(607,5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4,050,000원) × 15%

■ 기부금 세액공제

①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text{한도액} = [\text{근로소득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소득금액}] \times 100\text{분의 } 10 + [\text{소득금액의 } 100\text{분의 } 20\text{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의 } 100\text{분의 } 30$$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단체 조회 및 확인

(1)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검색 (좌측 메뉴에서 선택)

(2)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기부금 단체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소령 제81조)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30%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으로 200,000원을 기부한 경우 90,909원은 세액공제(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세액공제금액은 100,000원이 되는 것임)하고, 100,000원은 그 금액의 100분의 15인 1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부금세액공제 계산 사례

지출내역 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고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20만원	본인	
	법정기부금	50만원	본인	
	노인복지시설	50만원	배우자	

기부내역	기부자	공제대상여부	기부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이강모	여	20만원	10만원 이하	10만원	90,909
				10만원 초과	10만원	15,000
법정기부금	이강모	여	50만원	50만원		75,000
노인복지시설	황정연	부	50만원	-		-

① 근로소득금액 : 47,250,000원

② 정치자금기부금

1. 20만원 중 10만원은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되고,

2. 10만원 초과분(근로소득금액 100% 한도)은 15% 공제율 적용(15,000원)

③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50만원{(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세액공제액 : 75,000원(세액공제 대상금액 × 15%)

④ 노인복지시설 5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지출 기부금으로 공제 제외

■ 기부금 세액공제 : 180,909원

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 2조, 2014년 신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 하되,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중복공제 여부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연 500만원 (또는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 월세 공제 증빙서류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1 ~ 97.12.31 기간 동안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차입금 이자상당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⑩ 종합소득 과세표준				29,500,000		
⑤① 산출세액				3,345,000		
세액감면	⑤② 「소득세법」					
	⑤③ 「조세특례제한법」(⑤④ 제외)					
	⑤⑥ 세액감면 계					
세액공제	⑤⑦ 근로소득			630,000		
	⑤⑧ 자 녀			300,000		
	연금계좌	⑤⑨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①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2,500,000	
				세액공제액	300,000	
	특별세액공제	⑥②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⑥③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4,850,000	
				세액공제액	727,500	
		⑥④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4,050,000	
				세액공제액	607,500	
		⑥⑤ 기부금	㉑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100,000
				세액공제액	90,909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100,000	
				세액공제액	15,000	
			㉒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500,000
					세액공제액	75,000
		㉓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⑥ 계			180,909		
	⑥⑦ 표준세액공제					
⑥⑧ 납세조합공제						
⑥⑨ 주택차입금						
⑦⑩ 외국납부						
⑦①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⑦② 세액공제 계			2,865,909			
⑦③ 결정세액(⑤①-⑤⑥-⑦②)				479,091		

		구 분	㉔ 소 득 세	㉕ 지방소득세	㉖ 농어촌특별세	
III 세 액 명 세	㉗ 결 정 세 액		479,091	47,909		
	기납부 세 액	㉘ 중(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 록 번 호			
		㉙ 주(현)근무지		2,100,000	210,000	
	㉚ 납부특례세액					
	㉛ 차 감 정 수 세 액(㉗-㉘-㉙-㉚)		- 1,620,900	- 162,090		

⑧ 결정세액 및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1] 결정세액 : 479,091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2] 기납부세액 : 2,100,000원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

[3]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1,620,900원 (10원 미만 절사)

결정세액(479,091원) - 기납부세액(2,100,000원) = △1,620,900원

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특법 제30조]

[개정 세법] 중소기업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법 30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15. 1. 1. 이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 (2014. 12. 23.) 14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람**

1.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다른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율**

2012. 1. 1. ~ 2013. 12. 31 취업자의 경우 감면율 100% 적용

2014. 1. 1. 이후 취업자는 세법개정에 따라 감면율 50% 적용

7 농어촌특별세 납부

1 개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업,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독립된 세원이 있지 않고 다른 세금에 부가되어 추가되는 세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비과세로 특정한 경우외의 감면 및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에서 특정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감면세액의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중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3 과세표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및 납부

[1] 세액 계산

과세표준(감면세액 등) × 세율(20%)

[2] 신고 및 납부

①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한다.

04 연말정산 관련 유의할 사항

1 연말정산 오류로 근로소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부양가족명의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부당공제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다.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사례1] A사에 근무하는 오옥철(가명)씨는 총급여가 3,333,333원을 초과한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음

▪ 총급여 3,333,333원 - 근로소득공제 2,333,333원 = 근로소득금액 1,000,000원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사례1] B사에 근무하는 김현수(가명)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사업소득금액 9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음으로서 근로소득세가 추정됨

▪ 총수입금액 1,9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사례2] C사에 근무하는 최명수(가명)씨는 부업으로 학원 강사 수입이 있는 배우자(소득금액 5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시)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5]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6] 연금소득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7]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한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중복으로 기본공제한 경우 부당공제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다.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각각 공제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자녀 중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한 경우 부당공제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다.

③ 의료비 과다공제

[1]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한 경우 부당한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및 차남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차남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시 부모님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2]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을 세액공제받은 경우

[3]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환액 사후환급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본인부담금상환액 및 사후환급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환자 개인별 연간 의료비(단, 비급여항목은 제외)가 일정 금액(보험료 부담수준별로 연간 120만원부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여 주는 것을 사후환급금이라고 하며, 사후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연금저축 과다공제

- ①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②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한 경우
- ③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⑤ 교육비 과다공제

- 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 ②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한 경우

⑥ 보험료 과다공제

-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 ② 맞벌이 부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보험료를 공제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 ①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③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④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⑤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⑧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①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공제한 경우
- ②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공제한 경우

⑨ 신용카드 과다공제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액을 신용카드소득공제받은 경우
- ②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받은 경우

⑩ 기부금 부당공제

- ①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한 경우
- ②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③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④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주의 사항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근로소득이 3,333,333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② 잘못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른 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를 합한 금액 (한도액 미납세액의 10%)

①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frac{3}{10,000}$
② 미달세액 × 3%

다만, 소득세법 8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하게 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13. 1. 1. 개정)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 1. 1. 개정)

□ 근로자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원천세과-499, 2009.06.0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 제1항(현행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②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text{과소납부세액} \times \text{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times \frac{3}{10,000}$$

▶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text{초과환급세액} \times \text{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times \frac{3}{10,000}$$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47의4④)

2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과소신고분 과세표준(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text{수정 과세표준}} \times 10\%$$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부정과소신고분 과세표준(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text{수정 과세표준}} \times 4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40%)

부당한 방법의 유형

-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증명·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

▶ 적용사례

1.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정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2.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증명·허위문서의 작성 및 허위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 (국세기본법 § 48②)**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 분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특법 제132의2조]

-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2012년 투자분과 2014년 투자분 중 공제율 30%.5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1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세 1,2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20,000원이 환급발생된다.

미수금	1,320,000 / 미지급금	1,320,000
-----	------------------	-----------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조정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 상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2월 10일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근로소득세 4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4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440,000 / 미수금	440,000
------	---------------	---------

- 미지급금 : 관할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급여지급시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다음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미지급금이 상계한다.
- 미수금 : 1월 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400,000원 및 지방소득세 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 및 시·군·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임

환급세액을 납부세액과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돌려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감소한 거래다. 한편, 1월분 근로소득세는 종업원 개인별로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환급세액과 상계처리하여 납부한 것으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액에 기록함으로써 다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된다.

②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3. 10 2월 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6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6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660,000 / 미수금	660,000
------	---------------	---------

③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 환급세액 조정》 3월 31일 급여 10,000,000원 지급시 3월 근로소득세 5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50,000원을 계상하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금액 220,000원을 차감한 잔액 330,000원 [환급세액(1,320,000) - 1월분조정금액(440,000) - 2월분조정금액(660,000)]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70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차감 잔액 8,97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급여	10,000,000 / 예수금(근로소득세)	3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0
	예수금(국민, 건강)	700,000
	보통예금	8,970,000

④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4. 10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220,000 / 미수금	220,000
예수금(근로소득세)	300,000 / 보통예금	33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0	

3 환급할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2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320,000 / 미지급금	1,320,000
-----	------------------	-----------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②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금액 지급》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 조정환급 세액 1,2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20,000원이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지급하다.

가지급금	1,320,000 / 보통예금	1,320,000
------	------------------	-----------

- 가지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입금(가지급금 회수)으로 처리하고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징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 등 징수》 2월 10일 1월분 급여 1천만원 지급시 근로소득세 4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다.

급여	10,000,000 / 예수금(근로소득세)	4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④ 《근로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 상계》 1월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조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예수금(근로소득세)	400,000 / 가지급금	44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40,000	

- 가지급금 :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1월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미지급금	440,000 / 미수금	440,000
------	---------------	---------

- 미지급금 :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후 급여 지급시 징수한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 미수금 : 1월 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400,000원 및 지방소득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을 세액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임

4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및 환급금 입금

-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1,200,000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2. 10 환급신청을 하다.

미수금	1,200,000 / 미지급금	1,200,000
-----	------------------	-----------

- ② 《근로소득세 환급》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환급금액이 결정되어 법인의 보통예금에 환급금 1,200,000원이 입금되다.

보통예금	1,200,000 / 미수금	1,200,000
------	-----------------	-----------